

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임종국 의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은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

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·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한  
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 
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리고 현행 조례는 동록한옥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

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

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

신축, 전면수선, 부분수선 등 경우에 따라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등록한옥을 한옥체험업으로 운영하는 경우

신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의 10% 이내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서울시는 지난 해 9월,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 수준을 높여

3천만 관광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담은

서울관광 미래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.

본 개정안은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인

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의 일환으로

서울의 특별한 숙박경험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